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이병진 · 김주영
서미화 · 장철민 · 장경태
이용우 · 어기구 · 한병도
한준호 · 서영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,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「행정기본법」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, 사유,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「행정기본법」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,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

확보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62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의 정지”를 각각 “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폐쇄 등) ①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<u>사업의 정지</u> 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	제62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폐쇄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</u>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<u>사업의 정지</u> 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